

# 2024년도 제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2. 21.(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강태욱(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상수, 김춘식, 정경오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1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110건(안건번호 제2024-2667호~제2024-379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2667호~2682호(순번 1번~16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683호~2698호(순번 17번~32번)는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07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강태욱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4-1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강태욱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을 전부 공개함.

####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변호사: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태욱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박현주 변호사: 금일 심의안건은 29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11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19개 게시물임.  
(순번 1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댓글 및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자 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변호사: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앞선 사정과 같이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출판물의 pdf 파일의 판매글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 대상으로 충족하므로 가결함이 타당하는 의견임.
  
- A,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번~32번은 실명 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 및 카페, 웹하드 사이트에 방송물, 만화, 영화 등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이며, 총 17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변호사: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

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동조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7번~3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변호사: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33번~113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074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트롤: 밴드 투게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7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트롤: 밴드 투게더'의 약 91분 전체분량을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2. 20.에 개봉한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임. (방송 '킬러들의 쇼핑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96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킬러들의 쇼핑몰'의 약 60분 전체분량을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1. 17.에 방영 시작한 국내 웹드라마임.

(방송 '마스터스 오브 디 에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17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마스터스 오브 디 에어'의 약 60분 전체분량을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1. 17.에 방영 시작한 국내 웹드라마임.

(영화 '○○○○ ○'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33번은 보호원이 긴급대응저작물로 지정하여 신속심의를 요청한 저작물임. 웹하드에서 영화 '○○○○ ○'의 약 124분 전체분량을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1. 22. 개봉한 국내 영화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변호사: 순번 33번~1133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3번~113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2667호~2682호(순번 1번~16번)는 불법복제 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2683호~2698호(순번 17번~3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2699호~3799호(순번 33번~113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8쪽부터 1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1302호~1464호, 안전번호 1466호~1505호(순번 1번~163번, 순번 165번~204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1465호(순번 164번)는 부결함.”

4. 폐회 선언

○ 강태욱 분과위원장이 제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3. 6.

분과위원장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김상수

위원 김춘식

위원 정경오